

의료보험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 - 관리비용을 중심으로 -

남 광 성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모형별 관리운영비
II. 연구방법	4. 모의실험
1. 연구의 틀	IV. 고찰 및 결론
2. 연구자료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3. 분석방법	2. 결과에 대한 고찰
III. 결 과	3. 결 론
1. 관리모형	참 고 문 헌
2. 관리운영비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의료보험 관리체계는 의료보험법의 1976년 전면 개정 당시부터 이견이 있었으며¹⁾, 1977년 7월 500인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의료보험법이 적용되면서 단위 사업장을 주축으로 하여 의료보험이업을 관리하는 보험자가 설립되고, 보험자별로 요양취급기관을 지정하게 됨에 따라 가입자의 의료이용에 시간, 거리관계상 제약을 받았었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이 1979년에 시행되면서 전국에 산재한 가입자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 공·교보험자라 함)이란 단일보험자가 관리하는 방식을 적용하였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일원관리하는 동시에 전국 대부분의 의료기관을 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하

* 본 논문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박사학위논문(1988년도)을 요약한 것임.

** 국민연금 관리공단 금여심사부장.

1) 손준규,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집문당, 1982, pp.147-148.

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시켰으며, 급여비용을 청구즉시 지급하는 개선불제도를 실시하여 의료기관의 편익증대도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직장근로자를 위한 의료보험조합(이하 보험자라 함)도 1979년 7월 사단법인 전국의료보험협회에 요양취급기관 지정과 진료비 심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전국 의료기관을 일괄 지정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직장근로자도 그 이용상 편익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보험자관리방식과 단일보험자관리방식의 장·단점 비교가 있게 되고, 그 논의의 초점에 다소 변화는 있었으나 1980년부터 현재까지도 관리체계 즉, 다보험관리방식과 단일보험자관리방식에 대한 주장이 상반되고 있으며, 수많은 논의과정에서 관리운영비의 다과에 대한 상치된 견해도 논쟁의 하나가 되어 왔다.

1989년초부터 실시예정이던 도시자영자 의료보험관리 방식의 결정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긴박한 상황에 처한 1988년에도 주무부 주관의 공청회개최, 관계학자들의 상반된 건의와 주장 등으로 그 실시시기를 6개월 늦추었으며, 관계법령도 정당별로 제출하는 등 그 주장이 상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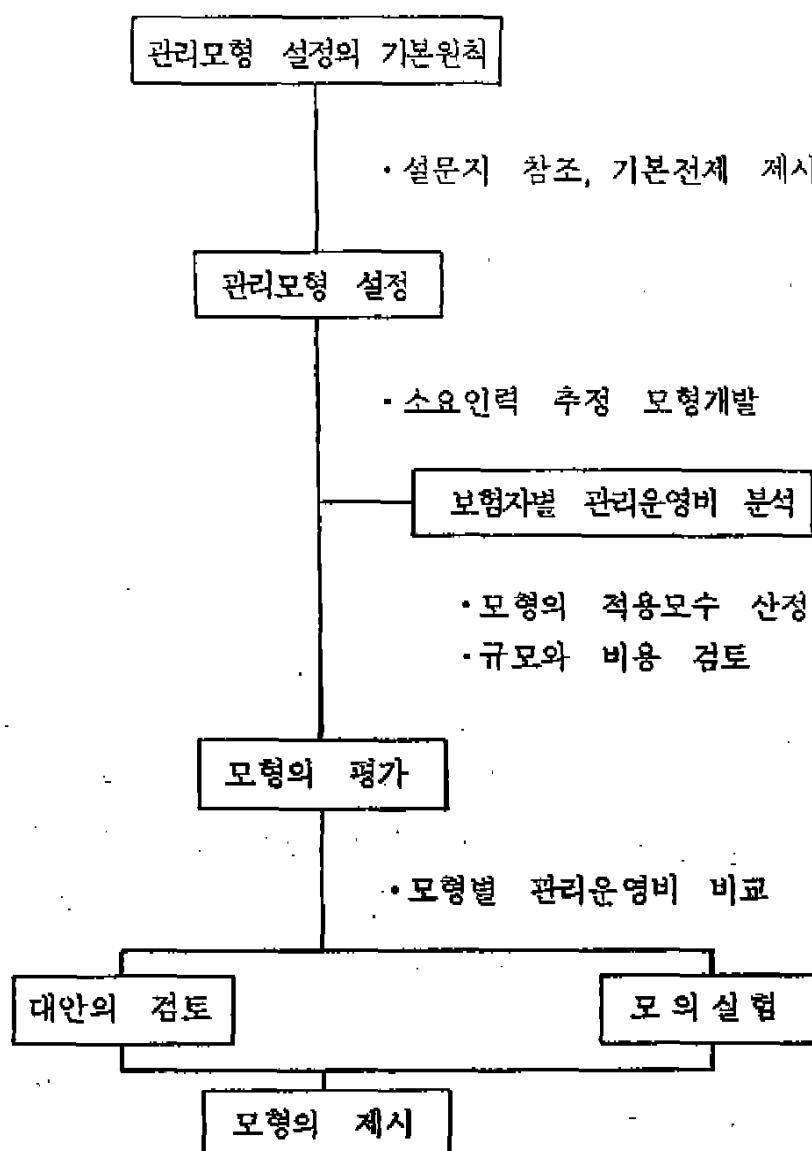
의료보험의 관리체계 연구는 합목적성, 사회정의 구현, 관리상의 편의 등 여러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의료보험을 전국민에게 적용할 경우 그 관리운영 모형의 설정, 관리운영비와 보험자규모와의 관계, 설정된 모형과 충소요 비용, 설정된 모형의 안정성 검토를 통해 관리운영비 측면에서의 바람직한 모형의 제시가 필요하며 이에 관리운영비 측면에서의 의료보험 관리체계를 연구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이 연구에서 연구방법은 아래 도1과 같이 그동안 논의되어 온 사안과 두 차례에 걸친 의견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모형설정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도출하여 관리모형을 설정하고, 설정된 모형별 소요인력을 개발한 산식과 산출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보험자 규모와 관리운영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거 설정된 모형에 적용할 모수산정을 검토하여 설정된 모형별 관리

운영비를 산출 비교하였으며, 설정된 모형의 안정성 검토를 위하여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도 1. 연구의 흐름

2. 연구자료

1) 의견조사

모형설정의 기본원칙에 관련된 의견조사는 의료보험에 관한 지명도가 높은 학자, 연구자 및 언론계 인사, 이해관계 단체인사, 의료보험업무 종사자 등 100

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두차례에 걸쳐 동일 내용을 가지고 개방식과 폐쇄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제시되었던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를 관리모형 설정의 기초로 하였다.

2) 실증자료

1982년부터 1987년까지의 연도별 의료보험조합결산현황, 공·교보험자 결산서(1979-1987), 의료보험연합회결산서, 지역의료보험조합결산서(시범) 등 927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3. 분석방법

1) 변수의 선정

관리모형 평가를 위한 변수는 모형의 경제성을 나타내는 관리운영비로 하고 이를 인건비, 회의비, 경상사무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직장보험자의 경우는 전산·심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의료보험연합회 결산서상의 각 항목별 지출금액을 각 직장보험자별 관리대상자 수의 비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환산하고 이 금액을 당해보험자 관리운영비 각 항목에 합산하였다.

관리운영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결산서상의 관리운영비와 사업장 수, 직원 수, 피보험자 수, 대상자 수, 총수입, 총지출 등의 변수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전술한 거의 모든 변수와 관리운영비와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여러가지 변수 중 자영가와 직장근로자 의료보험에서 공히 적용될 수 있는 피보험자 수 및 대상자 수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피보험자 1인당 관리운영비와 피보험자 수와의 관계 또는 대상자 1인당 관리운영비와 대상자 수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1인당 관리운영비, 대상자 1인당 관리운영비를 총속변수로 하고 피보험자 수, 대상자 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1차 회귀식, 2차 회귀식의 관계를 보기 위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P < .05$ 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2) 소요인력 산출

설정된 관리모형에 따른 소요인력 산출은 상부조직의 소요인력과 하부조직

의 소요인력을 각각 산출하여 그 합으로 구하였고, 상·하부조직의 소요인력은 공·교보험자, 직장보험자, 농·어촌시민보험자, 독포지역시민보험자, 의료보험연합회의 1987년 현재 인력을 감안하여 산출하였다.

하부조직의 소요인력은 모형별로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기본 모형을 설정한 후 그 모형별로 그 조직내의 대민업무 소요인력을 산출하고, 단위기구의 인력수에 따라 업무별 소요직원을 배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기준모형의 소요인력 산출은 아래 공식과 같이 하였고 기준모형은 행정구역(시·군·구)을 기초로 하되 인구 20만 미만 지역과 20만 이상 지역으로 대별하고, 20만 미만 지역의 경우는 인구 10만, 행정구역(읍·면·동) 수 15개 기준, 40명의 인력이 소요되는, 즉 직원 1인당 대상자 2,500명을 관리하는 모형을 기준으로 하고 그 초과 또는 미달되는 경우 가중치를 적용 소요인력을 가감하는 것으로 하였다. 20만명 이상의 경우는 인구 40만명, 행정구역 수 20개 기준, 135명의 인력이 소요되는 즉 직원 1인당 대상자 3,000명을 관리하는 모형을 기준으로 하되 그 초과 또는 미달의 경우 기준치와 가중치 적용은 위 20만 미만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하였다.

$$TPM = TPM_s + \frac{P - P_s}{(1+\alpha) \times MP} + (A - A_s) \times \beta$$

단. TPM = 해당지역 직원총수

TPM_s = 기준모형 직원총수

P = 해당지역 인구수

P_s = 기준모형 인구수

MP = 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수

A = 해당지역 행정구역수

A_s = 기준모형 행정구역수

α = ① 해당지역 인구가 기준 인구 초과시는 "0.2"

② " 미달시는 "1.0"

β = ① 해당지역 행정구역수가 기준 행정구역수 초과시는 "1.5"

② " 미달시는 "1.0"

위의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행정구역의 인구가 20만 이상의 경우

는 기준 인력산출의 기초를 20 만미만 지역에 있어서의 직원 1인당 관리 대상자 수에 20 %를 증한 것으로 하되 초과나 미달에 따른 증감 인력산출의 경우는 20 만 미만에서의 관리대상자 수를 적용하였고, 또한 구분관리 모형에서 100 단위 미만의 수는 계산상의 편의와 그 파급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 적의 조정하여 100 단위로 하였다.

3) 모의실험

시뮬레이션 모델은 IFPS (Interactive Financial Planning System) Package Program을 변형하여 이용하였다.

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 수의 증가에 따른 소요인력증 가변인력을 변화시켰을 때의 총직원 수, 직급별 직원수 및 관리운영비의 변화정도를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IFPS의 "What If"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였고, 이에 대한 가변변수는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출장소)의 인력으로 하고 중간관리기구나 상위기구의 인력은 불변변수로 하였다.

통합관리모형에서의 구역별 인구수와 행정구역 수에 따른 8개 모델, 구분 관리모형 중 자영자 조직에 있어서의 인구수와 구역수에 따른 8개 모델, 직장보험자 조직에 있어서의 비율 적용을 위한 1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 수의 증가에 따른 직원수 변화와 관리운영비 변화 및 직장보험자에 있어서의 정율변화에 따른 관리운영비 변화를 보았다.

III. 결 과

1. 관리모형

1) 모형의 제시

한국행정구역총람에 따른 우리나라 1987년도 인구를 41,160,993명으로 보고 시·군·구별 인구현황을 보면 인구 20만 미만이 185개이며, 20만 이상이 59개였다.

1987년 현재 의료보험 미적용 인구는 총인구에서 직장적용자와 공·교적 용자,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수치로써 17,439,543명이고 이는 전체인구의

42.37%였으며, 1987년 현재 의료보험적용자를 관리하는 임·직원수는 5,883명이고, 직원 1인당 평균 관리인원은 3,440명이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의견이 다양하였으나,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원칙과 전제를 두고 모형을 설정하였다.

원칙

첫째,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자 이외의 모든 국민은 수급권을 갖는다.

둘째,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한다.

셋째, 급여의 형평성이 보장된다.

넷째, 의료보험 대민업무의 수행단위를 최일선 행정구역인 읍·면·동으로 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편의가 고려된다.

전제

첫째, 보험료 부과 및 납부방법은 현체제로 유지한다.

둘째, 미적용 계층의 지역별 분포는 동일하다.

셋째, 대민업무담당 직원 일인당 관리대상자 수는 모형에 관계없이 유사하다.

넷째, 진료비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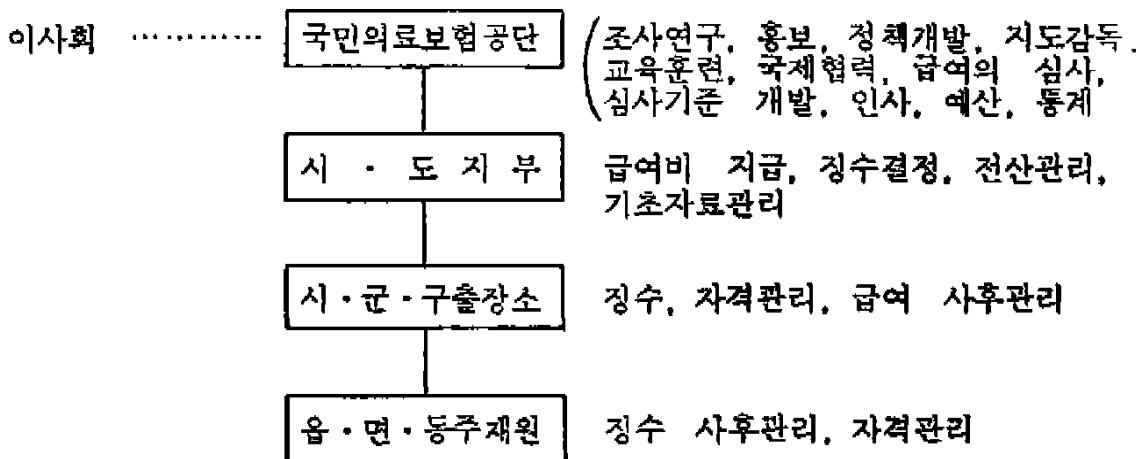
위와 같은 원칙과 전제하에 네가지 관리모형이 설정 가능하였다.

2) 모형의 설정과 인력의 산출

① 모형 I : 단일보험자 관리모형

국민의 의료필요를 의료보험방식으로 충족시키되 자격과 재정의 구분없이 그 관리기구를 단일보험자로 하는 관리모형을 칭한다. 다만, 부담과 연계하여 재정, 자격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 전산처리과정에서 구분관리도 가능한 모형으로 아래 도2와 같이 조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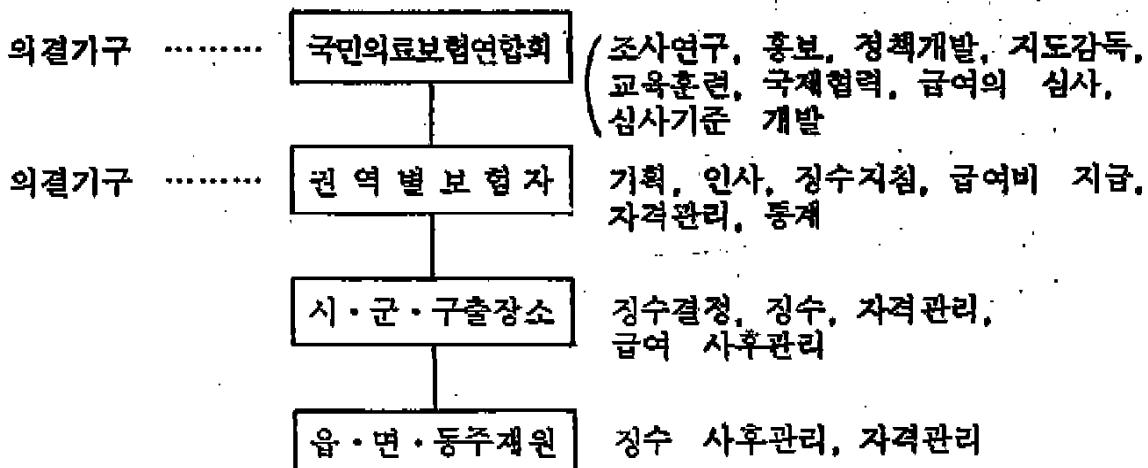
이러한 관리모형을 택하는 경우 전술한 방법으로 산출하면 244개 시·군·구에 출장소를 두며, 출장소 소요인력은 15,763명, 시·도지부에 698명, 공단본부에 945명, 총 17,406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도 2. 단일보험자 관리모형의 조직 및 업무

② 모형Ⅱ : 대형구역보험자 관리모형

이 모형은 행정권과 생활권을 고려한 시·군·구를 거주인구 약 200만이 되게끔 편성하여 1개 보험자를 두어 전국에 21개 대형구역보험자를 두고 중앙에 정책업무와 금여심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민의료보험연합회를 두는 모형으로서 그 조직 및 업무는 아래 도3과 같이 하는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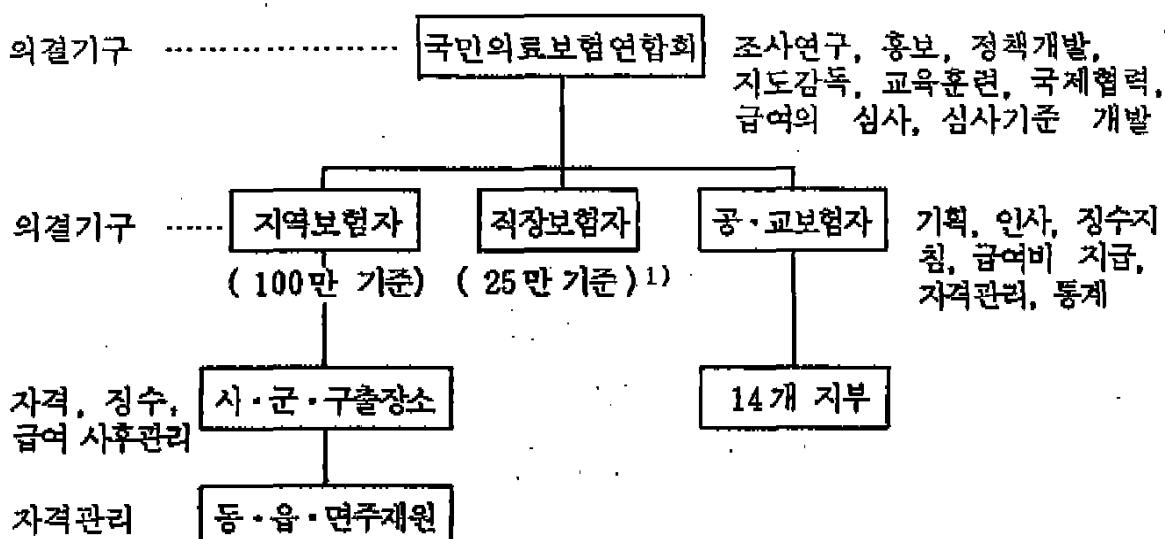
도 3. 대형구역보험자 관리모형의 조직 및 업무

모형Ⅱ의 경우 출장소 인력은 모형Ⅰ과 동일하게 되고 각 보험자가 보험자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을 순증시키는 것으로, 소요인력

은 출장소 15,763 명, 보험자 1,680 명, 연합회 945 명으로 총 18,388 명이 소요되었다.

③ 모형Ⅲ : 구분대형보험자 관리모형

아래 도 4와 같이 1987년 현재 시행되는 관리체계를 유지하되 그 관리 규모를 대형화 한 모형으로써 지역, 직장, 공·교로 자격과 재정을 구분하고 지역의 경우에는 모형Ⅱ에서와 같이 전국에 21개 보험자를 두어 관리하고 직장의 경우는 피보험자 25만 내외로 통합하여 전국에 20개 보험자를 두며 공·교의 경우는 1987년 체제를 유지하고 중앙에 보험자 단체인 국민 의료보험연합회를 두는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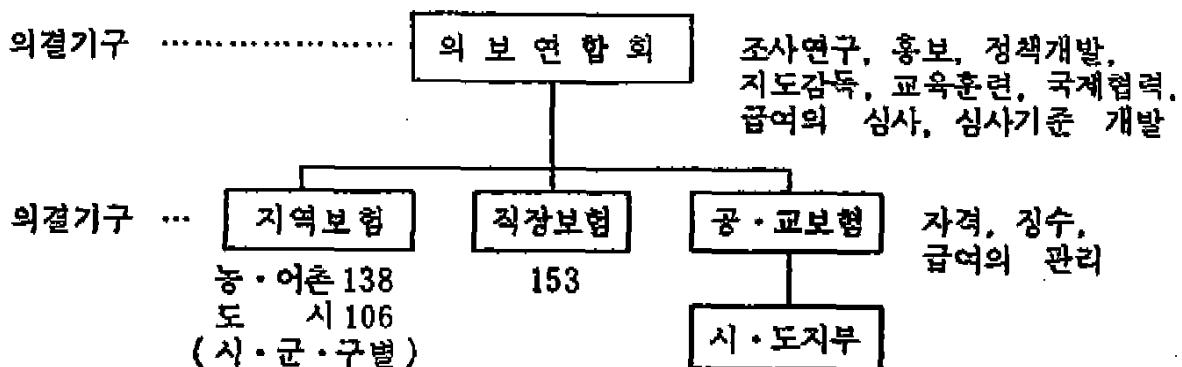
주 : 1) 서울 6, 부산 3, 대구 1, 인천 1, 경기 3, 강원 1, 광주, 전·남북 1, 충·남북 1, 경북 1, 경남·제주 2.

도 4. 구분대형보험자 관리모형의 조직 및 업무

위의 모형에서는 연합회 793 명, 공·교보험자 808 명, 직장보험 3,420 명 (현 4,136 명에서 716 명 감), 지역보험자 1,302 명, 출장소 11,863 명 (직원 1인당 1,400 명 관리기준), 합계 18,186 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④ 모형IV : 다보험자 관리모형

1987년 현재 실시중인 153개 직장보험자, 시·군지역별 138개 지역보험자, 1개 공·교보험자 관리체계에 106개 시·구단위보험자를 설정하여 총 398개 보험자가 전국민 의료보험사업을 관리하는 모형이다(도5).



도 5. 다보험자 관리모형의 조직 및 업무

이 모형에 의한 소요인력수는 연합회 705명(1987년 수준), 공·교보험자 808명, 직장보험자 4,136명, 지역자영자보험자 12,048명의 합인 17,697명이었다.

2. 관리운영비

1) 피보험자 및 대상자 1인당 평균 관리운영비

1983년부터 1987년까지 5년간의 총관리운영비를 피보험자 및 대상자 수로 평균한 연간 1인당 관리운영비는 표1과 같다.

표 1. 보험자별 피보험자 및 대상자 1인당 평균 관리운영비

단위: 원

구 분	직장보험자	지역보험자	공·교보험자
피보험자 1인당	6,269 (7,208)	-	8,354
대상자 1인당	1,978 (2,341)	3,781	2,075

주 : 1) 지역보험자의 관리운영비에 기타경비 포함.
2) ()의 수치는 연합회비용을 가산한 금액임.

2) 규모별 관리운영비

보험자 규모와 관리운영비와의 관계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변동율이나 소득 상태 등 여러가지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직장보험자의 관리운영비에 연합회 비용을 가산한 1983년부터 1987년까지의 피보험자 및 대상자 규모에 따른 보험자별 피보험자 및 대상자 1인당 평균관리운영비를 토대로 피보험자 및 대상자 규모와 피보험자 및 대상자 1인당 평균관리운영비와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피보험자 1인당 관리운영비 및 대상자 1인당 관리운영비를 종속변수로 하고 피보험자 수 및 대상자 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순회귀 분석한 결과는 표2와 같이 피보험자 규모가 클 수록 피보험자 1인당 관리운영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대상자 규모도 클수록 대상자 1인당 관리운영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P < .01$), R^2 가 0.03~0.04로 낮았기 때문에 2차함수관계를 도출한 결과도 R^2 는 변화가 적았다.

표 2. 직장보험자 규모와 1인당 평균 관리운영비와의 관계식

종속변수(Y)	독립변수(X)	관 계 식	F	R^2
피보험자 1인당 관리운영비	피보험자수	$Y = -267 \times 10^{-4}** X + 7948.24$ ($Y = 4 \times 10^{-7} * X^2 - 56 \times 10^{-8}** X + 8296.09$)	28.12 16.63	0.04 0.03
대상자 1인당 관리운영비	대상자 수	$Y = -29 \times 10^{-4}** X + 2593.43$ ($Y = 2 \times 10^{-8} * X^2 - 8 \times 10^{-3} X + 2758.32$)	26.30 17.89	0.03 0.04

* : $P < .05$ ** : $P < .01$

이를 다시 연도별로 살펴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연도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1차 회귀식과 2차 회귀식에서의 설명력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피보험자 수 및 대상자 수에 의한 보험자 규모와 단위관리운영비와의 관계는 단적으로 논하기 어려웠다.

표 3. 연도별 보험자 규모와 1인당 평균 관리운영비와의 관계식

연 도	관 계 식	F	R ²
1차회귀식			
1983	$Y = -314 \times 10^{-4} X + 6,706.52$	6.63*	0.04
	($Y = -46 \times 10^{-4} X + 2,340.58$)	6.24*	0.03
1984	$Y = -291 \times 10^{-4} X + 7,156.15$	10.12**	0.06
	($Y = -31 \times 10^{-4} X + 2,326.05$)	10.71**	0.06
1985	$Y = -231 \times 10^{-4} X + 7,799.33$	5.28*	0.03
	($Y = -29 \times 10^{-4} X + 2,560.40$)	7.18**	0.04
1986	$Y = -327 \times 10^{-4} X + 8,820.94$	12.55**	0.07
	($Y = -35 \times 10^{-4} X + 2,854.12$)	11.80**	0.07
1987	$Y = -455 \times 10^{-4} X + 10,065.69$	15.28**	0.09
	($Y = -44 \times 10^{-4} X + 3,183.57$)	11.33**	0.06
2차회귀식			
1983	$Y = 5 \times 10^{-7} X^2 - 664 \times 10^{-4} X + 7,072.43$	3.82*	0.04
	($Y = 4 \times 10^{-8} X^2 - 12 \times 10^{-3} X + 2,563.78$)	3.98*	0.04
1984	$Y = 10^{-7} X^2 - 385 \times 10^{-4} X + 7,261.64$	5.10**	0.05
	($Y = 5 \times 10^{-9} X^2 - 42 \times 10^{-4} X + 2,362.37$)	5.41**	0.06
1985	$Y = 10^{-7} X^2 - 317 \times 10^{-4} X + 7,900.01$	2.67*	0.02
	($Y = 9 \times 10^{-9} X^2 - 5 \times 10^{-3} X + 2,631.33$)	3.81**	0.04
1986	$Y = 2 \times 10^{-7} X^2 - 53 \times 10^{-3} X + 9,082.53$	6.52**	0.07
	($Y = 10^{-8} X^2 - 65 \times 10^{-4} X + 2,969.17$)	6.67**	0.07
1987	$Y = 7 \times 10^{-7} X^2 - 1011 \times 10^{-4} X + 10,741.77$	8.99**	0.10
	($Y = 5 \times 10^{-8} X^2 - 152 \times 10^{-4} X + 3,556.95$)	8.77**	0.09

주 : 1) * : P < .05 ** : P < .01

2) Y는 피보험자 1인당 관리운영비, X는 피보험자(대상자) 수입.

3) ()는 대상자 수 기준임.

3. 모형별 관리운영비

직장보험자 규모와 관리운영비와의 관계식의 기울기나 최저값을 이용하여 설정된 모형별로 관리운영비를 산출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계점이 있으므로 모형별로 산출한 인력수에 1987년도 직장보험자 기준 직급별 급여와 이에 대한 체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비율을 적용하여 모형별 총소요인건비를 산출하고, 경상사무비와 회의비는 하부조직인 출장소(또는 지역보험자)의 경우는 1987년도 직장보험자의 인건비대비 비율인 30.5%, 0.26%를 적용하였고, 출장소(모형IV의 지역보험자 포함) 이외의 조직에서는 공·교보험자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인건비 대비비율인 42.3% 및 0.57%를 적용하여 모형별 관리운영비를 산출한 결과는 표4와 같다.

표 4. 모형별 소요인력 및 관리운영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소요인력(명)	관리운영비	인 건 비	경상사무비	회 의 비
모 형 I	17,406	155,707	117,900	37,460	347
모 형 II	18,388	165,566	124,800	40,830	386
모 형 III	18,186	170,369	126,100	43,800	469
모 형 IV	17,697	175,129	129,100	45,540	489

모형I의 관리운영비를 100으로 볼 때 모형II는 6.3%, 모형III는 9.4%, 모형IV는 12.5%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만을 볼 때 모형II는 모형I보다 5.9%, 모형III은 7.0%, 모형IV는 9.5%가 많으며, 이에 따라 동률적용된 경상사무비와 회의비가 관리운영비 증가에도 영향을 주었다.

4. 모의실험

1) 모의실험의 변수와 시나리오

관리모형별로 산출된 관리운영비를 기초로 하여, 설정된 관리모형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데는 IFPS Package를 이용,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모의실험을 위하여 사용한 변수중 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 수의 증가에 따

본 가변변수로서의 직원수 (4,5,6급) 및 관리자 수 (2,3,4급)에 따른 기구상의 변화기준을 두되 하위직의 감소에 따라 전술한 16개 모형별로 그 상위직의 감소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적용하였다.

모의실험에 있어 모형별로 적용한 시나리오는 표 5와 같으며 직장보험자의 경우는 대민업무담당 구분이 보험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가변인력 수를 총 인력수의 60%로 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정을감소시키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표 5. 관리모형별 모의실험 시나리오

시나리오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출장소(지역)의 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수				
20% 증가 (A)	○	○	○	○
30% 증가 (B)	○	○	○	○
40% 증가 (C)	○	○	○	○
출장소(지역)의 가변	○	○	○	○
인력·모두제외 (D)				
직장보험자의 총직원수	-	-	○	○
10% 감소+ (A)	-	-		
직장보험자의 총직원수	-	-	○	○
15% 감소+ (B)	-	-	○	○
직장보험자의 총직원수	-	-	○	○
20% 감소+ (C)	-	-	○	○
직장보험자의 가변인력	-	-	○	○
모두제외 + (D)	-	-	○	○

2) 모의실험의 결과

(1) 직원수의 변화비율

위와 같은 시나리오에 의해 모의실험한 결과를 보면 표 6과 같이 모형별 변화의 폭이 모형 I, II, IV 그리고 모형 III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대안별 모의실험에 의한 직급별 직원수 변화 I

대안		구분 ¹⁾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단위 : %
출장소(지역)의 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수 20% 증가	2 급	-	-	-	-	-	
	3 급	-5.6 ²⁾	-5.3	-3.2	-1.9		
	4 급	-7.8	-7.3	-5.5	-5.3		
	5 급	-20.2	-19.3	-16.7	-18.1		
	6 급	-21.9	-20.0	-15.1	-16.2		
	총직원수	-15.5	-14.7	-11.4	-11.5		
출장소(지역)의 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수 30% 증가	2 급	-	-	-	-	-	
	3 급	-8.4	-4.0	-5.6	-3.9		
	4 급	-14.4	-13.4	-7.4	-7.3		
	5 급	-27.9	-26.8	-23.2	-25.1		
	6 급	-29.2	-27.7	-20.9	-22.4		
	총직원수	-22.1	-20.9	-15.8	-16.1		
출장소(지역)의 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수 40% 증가	2 급	-4.7	-5.9	-3.7	-2.7		
	3 급	-13.3	-13.3	-7.4	-5.3		
	4 급	-16.9	-15.7	-14.2	-15.3		
	5 급	-34.6	-33.2	-28.7	-31.1		
	6 급	-36.2	-34.4	-25.9	-27.7		
	총직원수	-27.6	-26.2	-20.6	-22.6		
출장소(지역)의 가변 인력 ³⁾ 모두제외	2 급	-12.6	-12.0	-9.9	-7.3		
	3 급	-28.2	-29.6	-21.4	-17.6		
	4 급	-47.4	-55.9	-32.7	-36.1		
	5 급	-77.1	-73.9	-61.2	-66.4		
	6 급	-85.4	-81.1	-60.1	-64.4		
	총직원수	-64.6	-61.1	-46.6	-47.9		

주 : 1) 모형내의 가변직급임.

2) 모형별로 기준모델(Base Model)의 직급별 직원수에 대한 증(+), 감(-)의 %임.

3) 자격, 정수관리 인력임.

모의실험의 시나리오를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형Ⅲ, Ⅳ에 적용한 결과 역시 표7과 같이 모형Ⅳ가 모형Ⅲ보다 직원수의 변화쪽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대안별 모의실험에 의한 직급별 직원수 변화Ⅱ

단위 : %

대 안	구 분 ¹⁾	모 형 Ⅲ	모 형 Ⅳ
출장소(지역)의 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 수 20%증가 및 직장보험자의 총직원수 10% 감소	2 3 4 5 6 총직원수	-3.3 ²⁾ -7.9 -18.7 -25.4 -13.3	-1.9 -8.7 -20.8 -19.3 -13.8
출장소(지역)의 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 수 30%증가 및 직장보험자의 총직원수 15% 감소	2 3 4 5 6 총직원수	-5.6 -11.0 -26.1 -24.7 -18.6	-3.9 -12.3 -29.2 -27.0 -19.6
출장소(지역)의 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 수 40%증가 및 직장보험자의 총직원수 20% 감소	2 3 4 5 6 총직원수	-3.7 -7.4 -19.2 -32.6 -30.9 -24.4	-2.7 -5.3 -22.0 -36.5 -33.9 -25.8
출장소(지역)의 가변인력 ³⁾ 모두제외 및 직장보험자의 가변인력 ⁴⁾ 모두제외	2 3 4 5 6 총직원수	-9.9 -21.4 -45.6 -71.5 -73.3 -56.4	-7.3 -17.6 -49.5 -77.3 -76.9 -57.3

주: 1) 모형내의 가변직급임

2) 모형별로 기준모델(Base Model)의 직급별 직원수에 대한 증(+) , 감(-)의 %임.

3) 자격, 정수관리 인력임.

4) 직장조합 총직원수의 60%를 가변인력으로 함.

(2) 관리운영비의 변화비율

대안별 모의실험에 의한 인력을 산출하고 관리모형별 관리운영비 산출방식을 적용한 관리운영비의 변화는 표9와 같이 인력수의 변화비율 순서와는 다르게 모형 I, II, III 그리고 모형IV의 순이었다.

표 8. 대안별 모의실험에 의한 관리운영비의 변화 I

대 안		구 分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단위 : %
출장소(지역)의 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수를 20% 증가시킬 경우	인 건 비	-13.8 ²⁾	-13.1	-10.0	-9.5		
	경상사무비	-13.3	-12.3	-8.8	-8.2		
	회 의 비	-12.1	-10.9	-6.8	-6.5		
	관리운영비 ¹⁾	-13.6	-12.8	-9.6	-9.1		
출장소(지역)의 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수를 30% 증가시킬 경우	인 건 비	-20.0	-18.8	-13.9	-13.2		
	경상사무비	-19.2	-17.8	-12.2	-11.5		
	회 의 비	-17.6	-15.8	-9.6	-9.0		
	관리운영비	-19.7	-18.6	-13.5	-12.8		
출장소(지역)의 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수를 40% 증가시킬 경우	인 건 비	-25.1	-23.9	-18.7	-18.0		
	경상사무비	-24.1	-22.5	-16.3	-15.5		
	회 의 비	-22.2	-19.9	-13.0	-12.3		
	관리운영비	-24.9	-23.6	-18.0	-17.3		
출장소(지역)의 가변 인력 ³⁾ 을 모두 제외 시킬 경우	인 건 비	-59.2	-55.9	-42.3	-41.2		
	경상사무비	-56.8	-52.6	-37.1	-35.6		
	회 의 비	-52.4	-45.3	-29.5	-28.2		
	관리운영비	-58.6	-55.1	-41.0	-39.7		

주 : 1) 관리운영비=인건비+경상사무비+회의비

2) 모형별로 기준모델(Base Model)의 인건비, 경상사무비, 회의비 및 관리운영비에 대한 증(+), 감(-)의 %임.

3) 자격, 징수관리 인력임.

또한, 그 모의실험에 있어 적용방법이 동일한 모형Ⅲ과 모형Ⅳ의 변화정도를 보면 표9와 같이 인력변화와는 상이하게 모형Ⅲ의 관리운영비 변화폭이 모형Ⅳ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대안별 모의실험에 의한 관리운영비의 변화Ⅱ

대 안		구 分	모 형 Ⅲ	모 형 Ⅳ	단위 : %
출장소(지역)의 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수 20%증가 및 직장보험자의 총직원수 10% 감소		인 건 비 경상사무비 회 의 비 관리운영비 ¹⁾	-11.7 ²⁾ -10.8 -9.6 -11.5	-11.5 -10.6 -9.4 -11.3	
출장소(지역)의 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수 30%증가 및 직장보험자의 총직원수 15% 감소		인 건 비 경상사무비 회 의 비 관리운영비	-16.4 -15.3 -13.7 -16.2	-16.3 -15.2 -13.7 -16.0	
출장소(지역)의 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수 40%증가 및 직장보험자의 총직원수 20% 감소		인 건 비 경상사무비 회 의 비 관리운영비	-22.1 -20.6 -21.7 -21.8	-22.1 -20.5 -18.4 -21.6	
출장소(지역)의 가변인력 ³⁾ 모두제외 및 직장보험자의 가 변인력 ⁴⁾ 모두제외		인 건 비 경상사무비 회 의 비 관리운영비	-51.1 -47.9 -43.2 -50.3	-49.4 -45.6 -40.5 -48.4	

주 : 1) 관리운영비=인건비+경상사무비+회의비

2) 모형별로 기준모델(Base Model)의 대한 증(+), 감(-)의 %임.

3) 자격, 징수관리 인력임.

4) 직장조합 총직원수의 60%를 가변인력으로 함.

IV. 고찰 및 결론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의료보험관리모형의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의료보험 실시 10여년이 경과된 현금에 있어서도 학자나 관계 전문가의 견해에 있어 일치점이 적다는 점은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민에게 조속히 의료보험 수급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이나 대민업무가 행정 최소단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 일반적인 원칙에는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지만, 관리모형, 부담방식, 급여범위 등에는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조세방식에 의한 재원조달방식을 택하자는 사회보험의 영역을 벗어난다고 볼 수 있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그러한 주장에 따른 관리모형도 여러가지로 설정가능하지만, 그동안 거론되었고 비교적 다수의견이 제시된 4개모형만을 설정한 데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설정제시된 모형의 변형을 통해 여타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경험치를 활용하여 규모와 단위 관리비용간의 관계를 분석 검토하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보험자의 규모를 정하는 변수는 사업장 수, 총수입액, 직원 수, 관할구역의 범위 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민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피보험자 수(지역은 세대주)나 대상자 수(지역은 피보험자)로 규모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관리운영비 산출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소요인력의 산출은 자격변동율, 정수업무의 난이도, 지역의 광활한 정도, 당해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적 여건등과 의료수요의 차이 등 사회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 직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대상자 수를 경험치에 의거 산출하고, 행정구역수(읍·면·동)를 감안한 산출공식에 의거 산출하였다.

설정된 모형의 평가방법으로써 모형의 안정성 검증을 IFPS Package에 의한 모의실험 이외의 방법으로 시도할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이견도 있을 수 있고 또, 인적 서비스부문에서의 생산성 제고와 관련된 운영연구, 비용효

과분석, 관리효율성 분석 등의 연구가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IFPS 프로그램은 재무자료의 분석이나 기획에 유용하며 “What If”와 “Goal Seeking”으로 대별되는데 “What If”는 변수의 변경에 따른 결과의 예측에 “Goal Seeking”은 결과를 기대할 때 변수의 변경을 예측하는데 이용되는 프로그램으로써 관리비용과 관련한 모형의 안정성 검증에는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므로 “What If” 명령을 통하여 예측된 결과에 의거 설정된 모형의 안정성을 검증한 것이다.

2. 결과에 대한 고찰

설문조사 결과와 그동안 제시 또는 논의되었던 관리모형을 토대로 설정한 관리모형에 있어 각 모형에 대한 그 조직과 기능, 구조 및 소요인력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의 모형별 소요인력은 모형 I, IV, III, II의 순으로 그 총직원수에서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주로 중간관리기구(대행보험자)에 의한 것으로 기본적인 대민업무담당 인력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경험치를 통한 모수추정 및 보험자 규모와 단위 관리운영비의 관계검토를 위한 보험자 결산자료분석에서 직장, 지역, 공·교보험자 전체의 통합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공·교보험자는 그 대상의 특성이나 규모의 차이가 너무 크며, 지역의 경우 자료는 많으나 보험자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이를 포함한 분석은 현실과의 차이가 클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직장보험자만의 자료로 분석한 결과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회귀 1차식과 회귀 2차식에서 그 설명력으로 볼 수 있는 R^2 의 차이가 거의 없고, 따라서 피보험자 수 및 대상자 수에 의한 보험자 규모와 단위관리운영비의 관계는 특정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 즉, 규모가 크면 관리운영비가 감소한다는 주장²⁾이나 일정규모까지만 관리운영비가 감소하여 규모의 경제

2) 김영모 등, 전국민의료보험을 위한 통합일원화 방안, 사회보장연구회, 1988, pp. 8~12.

김영모 등, 국민의료개보험화의 합리적 방안, 한국사회보장연구소, 1982, pp. 83 ~84.

가 작용한다는 주장³⁾은 최소한 직장보험자 자료에 의한 본연구의 결과에 의하여 볼 때 양쪽 모두 한계성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형별 관리운영비를 산출함에 있어 회귀 1차식이나 2차식의 적정값을 적용하는데는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1987년도 보험자 및 보험자 단체의 항목별 단위비용을 적용하였다.

모형의 안정성 검토에 적용한 대안을 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 수로 한 것은 세대주와 사용자, 피용자 등을 구분한 접근의 어려움과 그 결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를 적용한 것으로 비율적용에 따라 하위직급 및 상위직급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나 대안의 변화에 따른 결과의 변화(인력변화)는 다같이 민감하여 4가지 관리모형이 모두 안정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관리모형별 관리운영비의 산출결과는 1987년도 결산자료의 일괄적용과 경상사무비와 회의비의 일괄적인 비율적용으로 규모에 따른 비용의 경험치 반영에는 미흡하지만, 동일한 조건하에서의 관리운영비 소요액의 산출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설문조사를 통한 의료보험관리모형을 설정하고 설정된 모형에 필요한 인력을 산출, 소요인력에 따른 관리운영비 소요액을 계산하였으며, 각 모형에 대안을 두어 모의실험한 결과는 관리모형에 따라 소요인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소요인력 총 수 이외에 직급별 구성에 따라 대안에 따른 변화정도에는 차이가 있음은 물론 관리운영비에 있어서 총 소요인력 수 이외에 그 직급별 구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 결 론

이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의료보험의 경험이 10여년에 이르고 있지만, 그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경우에도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었으며, 설문조사 결과와 그동안

3) 권순원 등, 한국의료보험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연구자 일등, 1988, pp.31-33.

이규식, 전국민의료보험과 관리운영의 과제, 사회보장연구Ⅲ, 1987, pp.88-89.

논의되었던 관리방식을 토대로 설정한 4 개의 관리모형은 각기 그 소요인력 을 달리하였다.

둘째, 직장보험자 결산자료에 의거 피보험자 수 및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한 보험자 규모와 피보험자 및 대상자 1인당 관리운영비와의 관계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범위는 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웠다.

셋째, 설정된 4 개의 관리모형을 모의실험한 결과 4 개모형 모두가 대안의 변화에 민감하여 안정된 모형으로 판단되었다.

넷째, 모의실험결과 보험자 규모가 를 수록 변화에 대한 민감도는 컷지만 소요되는 관리운영비의 변화정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소요인력 수는 물론 그 조직구조상 적금분포와도 큰 관계가 있었다.

다섯째, 관리운영비의 측면에서는 단일보험자 관리모형의 선택이 바람직하지 만 천산비용 연구와 운영연구 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또한, 의료보험제도가 처음으로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시점에서는 많은 인력이 소요되지만 국민의 수용태세가 확립되면 업무량이 감소될 수 있고 인적 서비스 부문에서도 생산성의 제고유도가 모색되어야 하며, 의료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 장래에 대한 문제해결을 가입자 자신의 능력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범주가 전제된다고 볼 때, 또한 부담의 소득비례원칙이 지켜진다고 볼 때, 의료보험 뿐만아니라 사회보장의 다른 분야와 연계된 업무도 소요인력과 연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안선택으로써 관리모형의 제시라기 보다는 방법론적으로 관리모형을 설정하고 모의실험을 통하여 설정된 모형의 안정성 검증 및 그 결과 예측을 할 수 있는 접근방법의 제시에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김상균,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 김지선, 한국행정구역총람, 선문사, 1988.
- 김진목, 한국사회보장론, 박영사, 1982.
- 김영모 등, 국민의료개보험화의 합리적방안,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2.
- 노인철 등, 도시지역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의료보험적용방안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 문옥춘 등, 의료보험의 발전적 개선방향, 보건사회부, 1988.
- 박성현, 회귀분석, 대영사, 1988.
- 박종기 등,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1981.
- 손준규,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집문당, 1982.
- 신설중등, 각국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198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78.
- 안병영, 복지국가의 형성·전개·위기, 사회과학논집 15,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 이규식 등, 전국의료보험 실시를 위한 제도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 _____, 전국민의료보험과 관리운영의 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1987.
- _____, 의료보험 업무 천산화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 이만갑·김경동, 사회조사방법론, 한국학습교재사, 1983.
- 인경석, 한국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6.
- 의료보험연합회, 해외법률자료Ⅲ, 1983.
- _____, '87 의보련 사업보고서, 1988.
- 양봉민, 의료보험-소득재분배와 보험저항, 사회보장학회, 1988.
- 양재모·유승흠, 국민의료총론, 수문사, 1985.
- 연세대학교대학원, 보건학 연구방법론, 1988.
- 연하철 등, 의료보험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83.
- 유승흠·김한중등, 피보험자 및 보험종사자의 의료보험에 대한 수용실태와 문제점 연구, 의료보험연합회, 1983.
- 유승흠(역), 병원관리, 수문사, 1985.

- 유승흠,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연세대학교, 1987.
- 유 훈, 행정학원론, 법문사, 1983.
- 윤혜미, 의료보험 일원화의 정책논의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4.
- 장인협·전남진,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개발연구원, 1982.
(역). 사회복지방법론. 수문사, 1986.
- 전기홍, 한 지역사회병원의 전략계획, 연세대학교대학원, 1986.
- 전남진, 사회정책학 강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 정명체등,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1988.
- 조우현, 병원재원기간 및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6.
- 최광열(역), 현대복지국가론, 서암출판사, 1986.
- 최천송, 의료보장정책론, 우진문화사, 1980.
- 한국데이터통신(주), 의료보험 전산화 연구 보고서, 의료보험관리공단, 1985.
_____, 국민연금 관리개발 계획, 보건사회부, 1987.
- 남광성, 의료보험에 대한 사회적인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1984.
- Abels P. and Murph MJ, Administration in the Human Services,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1981.
- Burns EM, Social Policy; The Stepchild of the Curriculum in Proceedings, New York, 1963.
- 佑口卓, 社會保障概說, 光生館, 1987.
- Donabedian A, Aspects of Medical Care Administr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 Feldstein PJ, Health Care Economics, John Wiley and Sons, Inc., 1984.

- George V. Wilding P, Ideology and Social Welfare,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76.
- George VN, Social Security; Beveridge and After,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68.
- Gilbert N. & Specht H,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1974.
- Higgins J, The Poverty Business, Basil Blackwell & Martin Roberston, Oxford, 1978.
- Kerlinger FN,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 Holt, Rineheart and Winston, Inc., New York, 1964.
- Miller D, Social Justice. Clarendon Press, Oxford, 1976.
- Mishra R, The Welfare State in Crisis, Wheatsheaf Books, Brighton, 1984.
- Titmuss RM, Commitment to Welfare. Gerge Allen & Unwin, London, 1976.
- Yang JM, Yu SH, Cho WH, Research Fields and Priority Setting for Health Sciences in Korea, Yonsei Univ. Seoul, 1985.